

(가칭) 조화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문

☐ 여주시 조화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 4(조합원공개모집)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 조합원 모집개요

- ※ 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조합원 모집 계약(신청)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조합원 및 계약자(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고,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지역주택조합(전라남도 여주시 울촌면 조화리 70-4외 58필지)은 주택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건축규모, 층수, 세대수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인·허가 진행과정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가입 자격조건이 될 경우 주택청약통장 없이 신청(가입)이 가능합니다.
- ※ 본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최초 조합원모집 공고일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익일 후 입니다.
- ※ 본 주택의 모집공고는 분양신청이 아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공고입니다.

1. 조합원 모집 주체 및 업무대행사의 성명, 주소

- 모집 주체 : (가칭)조화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대 표 자 : 김 영 욱
- 주 소 : 전라남도 여주시 울촌면 울촌로 115, 상가동 3층 1호(조화아파트)
- 고유번호 : 764-80-02235
- 업무대행사 : 주식회사 한진씨앤이
- 대 표 자 : 지 준 호
-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110, 4층 406호(광장동, 리버힐오피스텔)
- 법인등록번호 : 115211-0040473

2.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 및 건축개요

- 대지(지번) : 전라남도 여주시 울촌면 조화리 70-4외 58필지
- 대지 면적 : 25,457.00㎡
- 지역 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상업지역
- 연 면 적 : 104,591.26㎡
- 건 폐 율 : 23.61% / 용 적 율 : 289.40%
- 지 목 : 대지, 전, 답, 도로 등
- 공급 규모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2층 / 지상29층) / 총 602세대 예정

3. 토지확보 현황 및 계획

■ 토지확보현황

※ 본 조합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상기와 같이 사업대상지 내 토지에 관한 사용권원 확보 및 계약을 하였습니다.

구 분	구 역 면 적			토 지 사 용 권 원 확 보 현 황			소유권 확보현황
	사유지	국공유지	합계	동의	계약	합계	
대상면적(㎡)	25,108	349	25,457	11,337	1,663	13,000	0
비 율(%)	98.63	1.37	100.0	44.5	6.5	51	0
비고 (필지)	56필지	3필지(도로)	59필지	30필지	2필지	32필지	0

※ 토지사용권원 확보현황은 토지사용(동의/승낙)으로 토지소유권 확보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사용권원 확보현황 중 계약부분은 토지계약이 완료된 현황을 표시하였음.

※ 상기 토지확보 현황(확보면적, 확보지율 등)과 관련한 서류(토지매매계약서, 사용승낙서 등)는 홍보관 및 조합사무실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토지확보계획

※ 조합설립인가 신청기준인 80%이상 토지사용권원은 확보할 계획이며,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토지소유권 15%이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기준인 토지소유권 95%이상을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확보할 계획이며, 그 외 5%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22조에 의거하여 매도청구권으로 확보합니다.

4.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및 건설예정기간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주택건설 예정기간
602세대	착공 후 30개월

※ 상기 계획은 토지매입 및 인허가 (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승인 시 최종 확정됩니다.

5. 조합원 모집 세대수 및 공개 모집 기간

조합원 모집세대수	모집 기간 및 일시
602세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100%)	조합원 모집 공고일 : 2022년 상반기
	조합원 모집 예정일 : 2022년 3월 중순 ~ 7월말 까지

※ 총 602세대 중 조합원 602세대를 모집하고, 추가조합원 모집이 필요할 경우 [주택법]제11조3 제1항에 따라 관할구청으로부터 추가모집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까지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 모집공고 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별도의 모집신고(공고) 없이 신규신청자에 게 선착순 재공급 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설립인가이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는「주택법 제54조」에 의거 분양세대가 30호(세대) 이상인 경우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얻어 일반분 양 예정입니다. (30호 미만인 경우는 임의분양임)

※ 선착순으로 모집예정이며, 조합원 모집차수를 구분하여 해당 차수별 조합원 충원시 다음차수 모집으로 변경됩니다.

6. 건축계획안(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및 세대비율)

구 분	주택형	세 대 별 주 택 면 적 (㎡)							비 고	
		공 급 면 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세대수	대지지분		(세대비율)
		전 용	주거공용	계						
주택형	59형	59.946㎡	21,991㎡	81.937㎡	45,339㎡	127,276㎡	50	32.168㎡	8.30%	
	84형	84.988㎡	25.059㎡	110.046㎡	64,279㎡	174,325㎡	552	43.204㎡	91.70%	

※ 상기 계획은 토지매입 및 인허가(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최종 확정됩니다

7. 조합원가입 신청자격, 가입신청 안내 및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 자격

신청자격	주택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 의 날을 말함)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것(「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에 따른 당첨자 지위 및 이를 승계한 사람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음)
	②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 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③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 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 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④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 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주택 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봄.

■ 가입신청 안내

신청기간	신청 장소	비고
모집공고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접수시까지	주택홍보관 주소 : 전남 여수시 박람회길1(덕충동)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 A동 103호, 104호(면적 1,117㎡)	전타입 동일함

- 구비서류

본인 계약시	준비물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② 인감도장 ③ 막도장(조합제출용 / 한글이름) ④ 무통장입금증(조합원가입 신청금 입금증)
	구비서류	⑤ 주민등록등본 3통(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일자 기재) ⑥ 주민등록초본 3통(주소변동사항 및 세대주 포함) ⑦ 가족관계증명서 2통 ⑧ 인감증명서 7통(용도는 공란으로 발급)
	추가서류	⑨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⑩ 혼인관계증명서 1통(미혼 또는 단독세대주) ⑪ 주택보유자 :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⑫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보유자 : 임대아파트계약서 사본 1부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함) 상기 준비물 및 구비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⑬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용도: 조합원가입계약 위임용) ⑭ 계약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주택홍보관 비치) ⑮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8. 계약금 · 조합원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

(단위 m²,천원)

[illegible]

- 계약금 이외의 조합원분담금의 납부 시기는 인·허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조합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중도금 회차별 납부일정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단, 중도금 납부일정 및 금액은 금융기관 대출여건 및 시공사 협의과정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납부일정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사전에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상기 분담금은 동별, 층별, 항별, 호별에 따라 분담금 차이가 있으며, 상기 금액은 절대 확정금액이 아니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이 분담해야 할 비용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5층, 저층부(6F~10F), 중층부(11F~20F), 상층부(21F~29F)로 분류되며 상기 계획은 사업승인 시 확정 >
- 조합원분담금 중 중도금대출(50%)은 후불제로 제공하며, 조합원은 은행권 대출시 발생하는 이자를 후불(추후 통보)제로 지급합니다..
- 상기 조합원분담금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옵션품목(옵션여부 홍보관 단위세대에 표기)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발코니 확장 및 옵션마감재 금액은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 전에 알려드립니다. (추후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총회의결을 통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별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조합가입 계약서상의 연체료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조합원분담금 총액에는 업무대행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업무대행비는 세대당 일금 이천만원(W20,000,000/부가세 별도)으로 별도의 지정 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조합원분담금 외에 소유권 이전등기비, 취득세(기존 세법상 등록세 포함)등의 제세공과금(보존등기비 등)은 조합원 개별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상기 조합원분담금은 조합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대행비(행정비)와 별도이며 토지매입비(용역비포함), 건축공사비 등 본 건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용 일체(설계비, 감리비, 지구단위, 측량, 감정평가비, 철거비, 신락 및 금융수수료, 변호사비, 법무사비, 회계사비, 민원 및 소송 비용, 과태료, 조합운영비, 홍보관 건립 및 해체비, 홍보관 운영비, 임차료, 광고홍보비, 조합원모집비 등)에 사용됩니다.
- 분담금 중 원가에 반영시킨 용역항목과 관련된 부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면적에 대한 금액은 상기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모집대상 및 부담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일반(임의) 분양할 예정입니다.
- 계약시 계약금을 납부하는 시점부터 "본 계약"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 상기 신청금, 계약금(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는 아래 9항의 자금관리 신탁계좌에 조합원이 개별 입금(반드시 조합원 성명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일체 인정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조합원에게 책임이 귀속함과 동시에 조합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9.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자금관리 주체		상 호 : ㈜무궁화신탁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타워역삼) 대표자 : 권 준 명 법인등록번호: 110111-2867418		
자금관리 계획		조합원이 납부하는 부담금을 본 사업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조합은 자금관리 대리 사무계약에 의거하여 자금관리 수탁사인 (주)무궁화신탁에 위탁하여 관리합니다.		
계좌 번호	가입계약금 (신청금)	신한은행	140-013-670290	㈜무궁화신탁 대표 권준명
	가입계약금 (분담금)		140-013-670325	
	업 무 대 행 비		140-013-670282	

10. 조합원 당첨자 발표의 장소·일시 및 방법

조합원 당첨자 발표	장 소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1, 국제관 A동 1층 조화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주택홍보관
	일 시	조합원 자격 및 계약금 입금 완납 확인 후 즉시 (2022년 1월 25일 ~ 2022년 4월 30일 까지)
	방 법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로 계약금 선 수위 입금자로 하며, 당첨 여부는 개별 통지 함.

- ※ 조합원 모집은 조합원모집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가입 계약금을 납부하고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 신청기간 내에 조합가입이 완료되면 조합원 모집을 마감하고, 가입계약이 완료된 당첨자의 조합원자격은 조합설립시 확정됩니다.
- ※ 단, 상기 조합원 당첨자 중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조합원자격 부적격자로 통보시 해당 조합원은 조합원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15. 사업추진 예상 일정

사 업 추 진 계 획	예 상 일 정	비 고
창 립 총 회	2022년 6월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개최 예정
조합설립인가 신청	2022년 8월	모집 조합원수 및 모집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2022년 10월	모집 조합원수 및 모집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착 공	2023년 3월	시공사와 협의된 모집 조합원수 및 모집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 및 입주	2025년 8월	공사기간 약 30개월 소요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입주예정일은 인·허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체결 후 확정하여 개별통보, 고지할 예정입니다.

※ 입주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시 예정된 공사일정과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일정의 지체,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 등은 모집(사업)주체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 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 입주 지정일에 함께 완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16.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권리

※ 사업계획으로 정한 조합주택의 공급 청구권

※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

※ 임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피선출권은 조합원에 한하며 조합원 이외의 자는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 조합원의 의무

※ 조합원 부담금[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업비(설계비, 감리비, 업무대행비, 광고·홍보비 등 각종 용역비) 등의 납부 및 조합가입계약서, 조합총회 등에서 정한 금액 등의 납부 의무

※ 가입계약서의 명시사항, 관계법령 및 규약,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 조합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조합원이 유고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와 조합이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고 그 권한을 대리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이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합원은 개인자격 또는 유사단체 결성에 의한 조합대표권을 제3자에게 주장 할 수 없으며 조합원이 제출한 서류 중 미비한사항(자격미달 등) 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원의 책임으로 합니다.

17. 조합원 가입시 유의할 사항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2009년 4월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 되었고,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조합원분담금은 물가 상승률과 관련 없이 공급하는 금액으로 본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보전등기비용, 토지보유세, 소유권이전비용 등 관련법규 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은 준공 시 조합원이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조합원 모집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登記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또한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산 금액이 없습니다.

■ 층별 차등적용에 따른 조합원 부담금의 차이는 조합이 정하고 조합원은 이에 동의합니다.

■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확정되므로 조합원 모집시에는 확정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 혹은 기타 금융권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

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받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납부에도 불구하고, 토지비 및 초기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토지담보 대출 및 조합원 신용대출(필요시 조합원 대출자서를 해야 함)로 초기 사업비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부지 토지 15%소유권이전 등기시 개인신용론을 통한 토지소유권 이전 제 비용을 확보합니다.
- 조합설립인가전 신용론과 설립인가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 브릿지론은 주택사업승인후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로 전환됩니다
- 홍보관에 시공된 제품 및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사 협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보관은 조합원모집 완료후 일정기간 공개한 후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홍보관 내부를 영상 촬영하여 보관합니다.
- 홍보관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예시 평면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평면 형태 및 면적 등은 인허가 과정 및 관련법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단지, 기타홍보물 등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사업관련 사업(모집)주체의 각종 팸플릿, 안내문, 인터넷, 지면광고 등의 내용은 예정사항으로 본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최종적인 사항은 인허가 완료 후 조합 총회의 의결로서 확정합니다.
- 사업대상부지의 여건에 따라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하거나 개발규제(층수, 문화재, 경관 등)에 따라 사업규모 및 사업계획(예상층수, 예상세대수, 주차대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담금 및 분양가격이 달라지거나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부지, 건축규모, 단지배치 및 세대별 공급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조합의 총회를 거쳐 조합원 분담금이 가감 조정될 수 있고 조합원은 이에 동의하고 이에 따른 분담금 추가납부 또는 환급 방법은 조합의 이사회에 위임하며 조합은 이사회에서 변경내역을 확정하여 조합원에게 개별 통지하고 조합원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승인 과정에서 조합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사업비 변동요인이 발생시 공사 도급 계약조건에 따라 분담금 외에 별도 정산하기로 합니다.
- 업무대행비는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조합원의 계약철회, 조합탈퇴, 조합원 교체시 등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으며, 추후 재가입시는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시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서류(사본 불가)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폐기합니다.
- 조합원 가입 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홍보관 위치 및 신청장소

- 홍보관위치 : 전남 여수시 박람회길1(덕충동)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 A동 103호, 104호
- 문의 전화 : 061-659-2096
- 시 행 자 : (가칭)조화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업무대행사 : 주식회사 한진씨앤이
- 자금관리사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 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시 유의사항 안내문 및 조합원 모집신고 공고문을 추진위원회 사무실 및 홍보관에 비치하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모집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조합원 모집공고는 최근 개정된 주택법 및 관련법규 등을 반영한 것으로 반영한 것으로 사업추진 일정 및 내용 등이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편집 및 인쇄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은 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홍보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가칭) 조화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옥

